

평창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	49
----------	----

발의연월일 : 2018년 11월 16일

발 의 자 : 장문혁 의원외 6명

1. 제안이유

- 평창군 관내에 있는 국가 및 강원도지정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존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「평창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」를 제정하여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, 대상, 책무에 관한 사항(안제1조 ~ 제4조)
- 나. 보존 및 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(안제5조 ~ 제7조)
- 다. 무형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(안제8조 ~ 제11조)
- 라. 준용 및 표창에 관한 사항(안제12조 ~ 제14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별첨
 -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4조
- 나. 예산조치 : 공연수당 지급에 대한 사항으로 연평균 30백만원
2019년 제1회 추경에 편성예정
- 다. 입법예고(2018. 11. 1. ~ 2018. 11. 14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.
- 라. 집행기관 의견수렴(2018. 10. 5 ~ 11. 14)결과, 제출의견 반영.
 - 강원도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제도 운영에 따른 전수장학생 관련 조항 삭제
 - 도비 보조로 지원되는 육성사업비 지급기준 삭제

평창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평창군 관할에 있는 국가 및 강원도 지정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존하고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무형문화재”란 국가지정문화재나 강원도지정문화재 중 평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 관할에 근거를 둔 무형문화재를 말한다.
2. “무형문화재 보유자 등”이란 무형문화재의 기·예능보유자, 보유단체, 전수교육조교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 및 대상) ①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.

②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으로서 군 관할에 근거를 둔 경우에 한한다.

제4조(책무 등) ①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군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문화재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②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은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의 주체임을 인식하고, 그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·협력하여야 한다.

제2장 보존 및 육성위원회

제5조(설치 및 기능) ① 군수는 무형문화재의 효율적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평창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육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·결정한다.

1. 무형문화재의 보존·관리 및 활용계획
2. 무형문화재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
3. 무형문화재 지원 대상 여부
4. 그 밖의 무형문화재의 보존 및 지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

제6조(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③ 위촉직 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으로 하되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간사 등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, 간사는 문화예술 담당이 되고, 서기는 문화재 업무담당자가 된다.
②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,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.

제3장 무형문화재 보존·관리 및 활용

제8조(보존·활용 계획) ① 군수는 무형문화재의 체계적 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평창군 무형문화재 보존·관리 및 활용계획(이하 “보존·활용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보존·활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및 보유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

1. 무형문화재 보존 방향 및 정책
2. 전승, 교육 및 지원에 관한 계획
3. 공연, 전시 및 국내외 교류 등에 관한 계획
4. 홍보활동에 관한 계획
5. 그 밖의 무형문화재 육성에 관한 계획

제9조(무형문화재 보존전승 활동)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은 전통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1. 연 1회 이상의 공개 및 전시행사

2. 공연, 전시 등 교류행사 지원
3. 지역축제 또는 국내 각종 축제참여
4.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활동
5.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

제10조(사업추진 및 지원) ① 군수는 무형문화재의 효율적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군의 실정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사업(이하 “추진사업”이라 한다)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교육 및 홍보
2. 공연, 전시 등 개최 주관
3. 보존·전승활동 장려
4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군수는 추진사업의 지속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(이하 “전승지원금”이라 한다)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(전승지원금) 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전승지원금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.

1. 교육, 공연, 전시, 보호·육성 등 전승활동에 필요한 육성사업비 및 수당
2.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에 대한 전승활동비
3.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

② 공연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③ 국가 또는 강원도 지정문화재로서 국비 또는 도비 지원을 받는 지원금 등은 국·도비 지원 기준에 따른다.

④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연수당 지원을 군에 요청할 시에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제4장 보칙

제12조(표창) 군수는 추진사업의 수행 등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과 전수장학생, 보유단체회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.

제13조(준용)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조례 등에 따른다.

1. 「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」 : 무형문화재 보존·전승에 따른 보조 및 지원에 관한 모든 사항

2. 「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

가. 위원장의 직무, 위원회의 회의 운영, 의사 및 의결정족수

나. 위원의 위촉해제, 수당·여비 등 지급

다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2. 「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: 전승지원금의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·교부·정산, 지도·감독, 환수, 이의신청 등

3. 「평창군포상조례」 : 제15조의 표창

4. 「평창군 재무회계 규칙」: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회계처리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공연수당 지급기준

(제11조제1항 관련)

(단위 : 원)

분야별	대상	인원	지원규모	비고
국가지정 무형문화재	단체	50명 이하	평창군관내 30,000 강원도내 40,000 강원도외 50,000	공연인원별/ 연 5회 이하
도 지정 무형문화재	단체	50명 이하	평창군관내 30,000 강원도내 40,000 강원도외 50,000	공연인원별/ 연 5회 이하

【관계법령】

□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안 제11조(전승지원금) 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전승지원금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.
 1. 교육, 공연, 전시, 보호·육성 등 전승활동에 필요한 육성사업비 및 수당
 2.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에 대한 전승활동비
 3.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 중 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임.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의회 장문혁 의원
연락처	(033) 330 -2809